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45 발의연월일: 2025. 5. 2.

발 의 자:최보윤·박성민·김선교

김 건・서천호・최수진

임이자 • 박정훈 • 이종배

김소희 • 이인선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

아동학대의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, 피해아 동의 보호조치 결정 등의 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할 사항임.

이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 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장애 관련 시설의 장에 게는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그 밖에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미비 한 점들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거나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(안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4제1항 신설).
- 나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을 하도록 함(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).
- 다. 피해아동보호계획에 피해아동 및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22조의4제4호 신설).
- 라.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정보를 관리할 때에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(안 제28조2제2 항 후단 신설).
- 마.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 장애 관련 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).
- 바.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두어 장애아동

학대사건에 대한 통계 및 조사가 포함되도록 함(안 제65조의2 제2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 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2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

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 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 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4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피해아동 및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 요한 추가 지원 사항
- 5. 피해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계획. 다만,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에 한한다.

제28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.

제28조의2제3항제7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, 같은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, 같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
- 8.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의 장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
- 9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쉮터의 장

제6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한다"를 "하며, 장애가 있는 아동과 장애가 없는 아동에 대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"로 한 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보호조치) ① 시・도지사	제15조(보호조치) ①
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그	
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	
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	
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	
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	
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	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
<후단 신설>	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
	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
	심되는 경우 「장애인복지법」
	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
	옹호기관의 종사자 또는 보건복
	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
	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
	천하는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어
	<u>야 한다.</u>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① (생 략)	② ~ ①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	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
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	의무) ①
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	
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	

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u>5</u>. (생 략)

② ~ ⑦ (생 략)

제22조의4(피해아동보호계획의 저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피해아 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 동보호계획(이하 "보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_				
	_			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런 업무 종사자 교육

<u>6</u> .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세22조의4(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
립 등) ①
<u>이 경우 보호</u>
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
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
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에
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
사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
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

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

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

립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<u>4</u>. (생략)

② ~ ⑥ (생 략)

제28조의2(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) ① 삭 제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,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 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 에 입력・관리하여야 한다. <후 단 신설>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

1.	$\sim$	3.	(현행과	같음)

- 4. 피해아동 및 해당 아동의 보

   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

   라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
- 5. 피해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계획. 다만,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에한한다.
- 6. (현행 제4호와 같음)
-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8조의2(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) ① 삭 제

2	_				
_	٥Ì	겨우	미웨아본	二 に 上	미채

-.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 여야 한다.

(3)	 	 	 	 	 	

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 의 피해아동, 그 가족 및 아동학 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 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.

1. ~ 6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7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, 같은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 인권익옹호기관의 장, 같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 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
- 8.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8 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 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
- 9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장

- 7. (생략)
- ④·⑤ (생 략)
- 제65조의2(연차보고서) ① (생략)
  -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.
  - 1. ~ 5. (생략)
  - ③ ④ (생 략)

- 10. (현행 제7호와 같음)
- ④·⑤ (현행과 같음)
- 제65조의2(연차보고서) ① (현행 과 같음)
  - ② -----
  - -----<u>하며, 장애가 있는 아동</u> 과 장애가 없는 아동에 대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.
  - 1. ~ 5. (현행과 같음)
  - ③ ④ (현행과 같음)